

동일의약품 등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 발생 보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자	업체명	대표자	
	소재지		
우선판매품목	제품명		
허가			
의약품에 관한 정보	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날	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기간	
효력소멸 사유	동일의약품 등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합니다. [] 「약사법」 제50조의8제1항제2호의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파기하는 취지의 판결(「특허법」 제178조에 따른 재심의 심결을 포함합니다)이 있는 경우		
	[]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을 판매가능일부터 2개월 이내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		
	[]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판매금지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,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을 위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		
	사유 발생일		
	사유의 내용		

「약사법」 제50조의10제4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2조의11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일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업체명

담당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첨부서류	동일의약품 등 판매금지 효력소멸 사유의 발생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